

위와 아래로부터의 중국 변호사의 정치 참여

이동진*

목 차	
I. 서론	IV. 아래로부터의 중국 변호사의 정치 참여
II. 변호사와 공산당과의 관계	치 참여
III. 위로부터의 중국 변호사의 정치 참여	V. 결론

| 논문요약 |

중국 변호사의 정치 참여를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 전국인대대표와 전국정협위원으로의 선출, 구현급 인대대표 선거에서의 경선활동으로 구분해서 살펴 보았다.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는 전국인대대표와 전국정협위원으로의 변호사의 진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변호사가 구현급 인대대표 선거에 출마하게 된 것은 사회운동의 발전과 사회운동에서의 ‘인권 변호사’의 활동의 결과이다. 이와 같이 중국 변호사는 위로부터의 정치 참여와 아래로부터의 정치 참여라는 두 개의 트랙을 가지고 있다. 이 두 트랙이 어떻게 발전하는가에 따라서 중국 변호사의 정치 참여의 정도가 결정될 것이며, 나아가 중국에서의 시민의 정치 참여의 정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 개의 트랙은 분리된 것은 아니었다. 중국 변호사의 위로부터의 정치 참여는 아래로부터의 정치 참여를 추동하였던 2003년과 2007년에 이루어졌던 사회운동의 발전에 대한 대응으로서 중국 공산당이 채택하였던, 변호사를 포함하는 ‘신사회계층’을 우대하는 정책의 결과였기 때문이었다. 이 점에서 중국 변호사의 정치 참여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 공산당의 정책보다는 중국의 사회와 사회운동의 발전이다.

*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주제어: 중국 변호사, 정치 참여, 인민대표, 사회운동, 신사회계층

I. 서론

중국에서 2003년과 2007년(2008년)은 아주 특별한 해였다. 2003년에는 SARS 위기를 겪었고 북경 올림픽이 개최된 2008년에는 또한 쓰촨 지진과 티벳 폭동 위기를 겪었다. 이 두 해는 그 전해에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개최되었고 그해에 새로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가 개최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였다. 2003년과 2007년은 또한 중국에서 시민의 인권수호(維權)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해였다. 이 인권수호운동에 일부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참가했다. 인권수호활동 자체가 변호사의 업무의 한 영역에 속한다는 점에서 변호사가 자주 인권수호운동의 일선에 서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변호사가 시민의 권리를 대변하는 활동은 변호사의 업무 가운데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국가는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조’ 활동에 국한시키려고 한다.

국가권력과 시민권리의 관계에서 전자가 월등히 강력한 상황에서 시민에 속하는 변호사가 국가 권력을 상대로 하는 ‘고객대표’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가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변호사는 국가를 상대로 고객의 권익을 수호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중에 자주 자신의 권익을 침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변호사는 고객의 권익을 수호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권익을 수호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이 변호사는 국가와 사회의 관계에서 최전선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국가에 대해서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정치 참여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변호사가 고객의 권익을 수호하는 ‘고객대표’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변호사 단체를 통해서 자신의 권익을 수호하는 ‘자기(직업적)대표(자율 또는 자치)’ 활동과 함께 ‘인민(정치적)대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¹⁾ 변호사는 사법행정부문(또는 내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체

국가(또는 외부)에 대해서도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인민대표활동은 ‘인민대표대회’(이하 인대)와 ‘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에서의 활동을 말한다.²⁾

중국에서는 정치 참여라는 말 대신에 ‘선거 참여와 안건 토론(議案) 참여(參政議政)’라는 말을 사용한다. 인민의 정치 참여는 매우 제한되어 있고 여전히 정치는 공산당이 독점하고 있지만, 공산당으로서도 인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해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말하자면 일종의 ‘안전판’이 필요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제한적인 인민의 정치 참여를 ‘질서 있는’ 정치 참여라는 말로 표현한다. ‘질서 있는’ 정치 참여의 선두에 사영기업가가 서 있고, 변호사도 그 뒤에 서 있다.

이 글에서는 중국 변호사와 중국 공산당의 관계를 살펴본 다음, 중국 변호사의 정치 참여를 위와 아래로부터의 정치 참여와 그 배경에 대해서 각각 살펴볼 것이다. 위로부터의 정치 참여로서는 변호사의 인민대표활동으로서 2003년, 2008년, 2013년의 전국인대대표와 전국정협위원으로 선출된 변호사 구성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고, 아래로부터의 정치 참여로서는 북경시 변호사의 구·현인대 경선활동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결론에서는 2008년 이후에 위로부터의 중국 변호사의 정치 참여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II. 변호사와 공산당과의 관계

중국에서는 정부의 행정 계통에 병행하여 당 조직 계통이 있다. 사법부를 보면 기관의 영도 조직으로서 ‘당조(黨組)’가 있고, 기관 내의 각 급의 당 조직, 곧 소조-지부(支部)-총지부(總支)를 관할하는 ‘기관당위원회(機關黨委)’가 있다. 당조 서기는 사법부장이 겸임하고, 사법부기관당위 서기는 당조부서기 혹은 부부장이 서기를 겸임하고 정사급(正司級)의 전업 부서기를 둔다. 변호사사(律師司)는 기관당총지[혹은 기관분당위(機關分黨委)]

1) 변호사의 ‘자기대표’ 활동에 대해서는 이동진(2015)의 논의를 참조하라.
 2) 인대와 정협을 ‘양회(兩會)’라고 하고 같은 기간(兩會 期間)에 개최한다.

를 건립한다. 성급 사법청[성·자치구는 사법청(司法廳), 직할시는 사법국(司法局)]은 기관당위를 건립하고 변호사관리처는 당지부를 건립한다. 현급 사법국은 기관당지부를 건립하고 아래에 당소조를 둔다.

변호사사무소는 처음에는 모두 국가가 출자한 변호사사무소[국자소(國資所)]였고 변호사는 국가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변호사사무소는 다른 사법 행정부문의 부서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당조직을 가지고, 사법행정기관의 기관당조직에 예속되었다. 어떤 한 사람이 당조직과 맺는 관계, 그리고 그 당조직이 상급 당조직과 맺는 관계를 ‘조직관계’라고 하였다. 간부의 임명은 공산당의 조직인사부문이 고과를 하여 당위 또는 당조에 회부해 결정하고 최후에 당위 또는 정부[또는 주관국(主管局)]의 명의로 임명한다(柳州市情調查組 1996, 537-539). 헌법상으로는 행정 영도직은 동급 인대의 선거에 의해 임명되지만, 실제로는 동급 당위가 사실상 동급 인대대표의 ‘임명권’과 인대 상위회위원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 영도직에 대해서 ‘차액선거(差額選舉)’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당위의 결정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³⁾ 이러한 인사 관행을 풍자해서 “당위가 손으로 지휘하고, 인대는 손을 들고, 정협은 박수를 치고, 공장장은 손을 놀려 집행한다”라고 한다(朱光磊 1997, 74).⁴⁾

1983년 2월 사법부가 발표한 ‘변호사사무소(원문은 법률고문처) 주임·부주임을 탄생시키는 방법에 관한 회답’[(83)司發公字第47호]에서는 “현재 선거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급 사법국이 추천해서 당위조직부문의 동의를 거쳐 임시책임자로 지정한다”고 하였다(蔣敏瑞 1991, 41). 지구급(地區級市, 이하 地級市)인 유주(柳州)시의 인사관리를 보면 변호사사무소와 같은 사업단위의 경우에는 정치급(正處級) 사업단위의 정직(正職) 영도 간부는 시위상위회(市委常委會)에 회부해 토론 후 결정하고, 정치급 사업단위의 부직(副職) 간부(副處級 단위의 정직 간부)는 시위조직부(市委組

3) ‘차액선거’는 ‘등액선거(等額選舉)’와는 달리 당선자 수보다 후보자 수를 일정 비율(差額) 많게 한 제한적인 경쟁 선거를 말한다.

4) ‘이중영도관계’에 있는 검찰원의 예를 보면, 지방 각급 검찰장 등 주요 인원은 지방 인대(常委會)가 선출한 후 상급 검찰원에 보내면 상급검찰원이 동급 인대 상위회에 승인을 제청한다. 상급 검찰원은 검찰권과 행정사무에 대해서 하급 검찰원을 영도한다. 지방 당위는 당지 검찰원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만 영도하고, 검찰원이 처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승인권을 가지지 않는다(朱光磊 1997, 217).

織部)가 관리하였다.⁵⁾ 따라서 유주시 직속 변호사사무소의 주임은 시위상 위회가, 부주임은 시위조직부가 임명하였다. 이를 보면 위 사법부 훈령은 현급 사법국 직속의 변호사사무소[과급(科級) 또는 고급(股級)]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변호사가 직접 공산당과 사법행정부문의 통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89년 6·4기간에 북경의 변호사 중에서 100여 명이 시위에 참가하였다. 이에 6·4 사건 이후에 변호사에 대한 ‘사상정치활동’이 강화되고, 변호사인원을 정리(清理)·정돈(整頓)하였다. 사법행정부문에서는 천안문 사건 이후 변호사에 대한 사상정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사상정치활동 영도를 전담하는 정치활동(政工) 간부로서 ‘정치협리원(政治協理員)’을 배치했다. 1989년 10월 상하이시사법국의 ‘시속 변호사사무소에 정치협리원을 설립하는데 관한 약간 규정’은 “계약제 인원을 포함해 변호사 인원이 20명 이상인 변호사사무소는 정치협리원을 1명 배치하고 20명이 되지 않는 변호사사무소도 활동 수요에 근거하여 정치협리원을 1명 둘 수 있다”고 규정했다(茅彭年·李必達 1992, 301). 정치협리원은 시사법국 정치부의 지도를 받았다. 심천시(深圳市)사법국은 1990년 6월 변호사종업청렴활동회의 취지를 전달한 후 변호사관리처에 정치협리원을 배치하고 각 변호사사무소에 정치부 주임을 두었다(李必達 1997, 930). 시사법국 직속 변호사사무소 당총지를 건립하고 정치협리원이 당총지 서기를 담임했다. 1994년 말 절강성(浙江省)은 3분의 1에서 2분의 1의 변호사사무소에 정치협리원이 배치되었다.

1991년에 구성된 제2기 전국변협의 임원은 대부분 사법부의 현직 간부가 겸임할 정도로 변호사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었지만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講話)’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개혁에 발맞

5) 행정급별은 부문(條)과 지방(塊)의 두 계통이 있는데 지방은 성급, 부성급, 지급, 현급이 있다. 직할시는 성급, 성 소재지(省會) 시는 부성급(副省級), 지구 소재지 시는 지구급(地級), 현과 동급인 소도시는 구(區)·현급(縣級)이다. 이에 대응하는 부문의 급별은 부급(部級), 사급(司級), 성급 정부에서는廳·局, 처급(處級)이며, 현 처급 아래에는 지방은 향급(鄉級)이며 부문은 과급(科級)이었다. 그 다음이 과원(科員, 股級)이었고, 그 아래에는 사무원(事務員)이었다. 또한 이러한 행정급별은 군대급별과도 대응되었다. 군대급별은 군단(軍), 사단(師), 연대(團), 대대(營), 중대(連), 소대(排)의 급별로 이루어져 있었다. 각급에는 다시 정급(正級)과 부급(副級)이 있었다.

추어 변호사제도도 개혁되었다. 1988년에 사법부가 ‘합작제변호사사무소시범 실시방안(合作制律師事務所試點方案)’을 발표하여 합작제변호사사무소(합작소)가 출현한 데 이어서 1993년에는 ‘합동변호사사무소(합동소)’가 출현하였다. 곧 중국의 변호사사무소가 국자소에서 합작소라는 과도적인 형태를 거쳐서 합동소로 전환해 갔다. 합동소는 국가의 예산과 직제(編制)를 점하지 않았다. 국자소도 ‘사업단위’의 하나로서 ‘사업단위’ 개혁에 발맞추어 개혁이 이루어졌다. 1995년에는 변호사사무소 간에 공정한 경쟁을 하게 하기 위해서 급별을 달리하는 - 곧 성 소속(省屬 혹은 省直屬), 시 소속(市屬), 현 소속 - ‘국자소’의 명칭에 현 이상 행정구역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최송자 2010, 260-262).

변호사사무소의 개혁에 따라 변호사 가운데 당원의 비율이 하락하였다. 1994년 말 절강성의 예를 보면 전업변호사 1,903명 중 당원은 440명으로 전체 전업변호사의 23%를 차지하였다. 변호사사무소는 사업단위이고, 전문간부 대우를 받아서 일반적으로 행정단위나 행정간부와 비교하여 당원의 비율이 낮았다. 그리고 더욱이 국가로부터 떨어져 나온, 다시 말하면 전인민소유제가 아닌 변호사사무소의 경우는 당원의 비율이 더욱 낮았다. 당원의 조직관계를 보면 성 직속과 항주(杭州)·영파(寧波)·온주(溫州) 시 직속의 53개 변호사사무소 중 22개(22.6%)가 ‘독립지부’를, 영파시 직속의 중·소 변호사사무소는 다른 변호사사무소와 ‘연합지부’를, 그리고 대다수의 현·구 및 성 직속과 항주시 직속의 국가 직제를 점하지 않는(不占編) 변호사사무소는 사법행정기관과 ‘혼합지부’를 건립하였다.⁶⁾

독립지부가 적은 것은 변호사사무소의 전업변호사 수가 3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근본적인 원인 이외에도 기관당위(機關黨委, 總支), 현·구사법국, 변호사사무소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독립지부 건립에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곧 기관당위(총지)는 변호사사무소가 기관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기관당위(총지) 통로에 들 수 없다고 여기고,

6) 1999년 상해(上海)시 변호사 4,374명 중 당원이 1,427명이었다. 국가가 출자한 변호사사무소(國資所)와 대형 변호사사무소(大所), 설립이 오래된 변호사사무소(老所)에는 당원이 많았지만, 일부 신규 설립 변호사사무소(新辦所)와 소형 변호사사무소(小所)는 당원이 매우 적었고 어떤 변호사사무소는 당원이 없었다(上海市司法局 1999, 118).

현·구사법국은 변호사사무소가 독립지부를 건립하면 기관지부와 떨어져서 현·구정부기관당위가 직접 영도하게 될 것을 염려하고, 변호사사무소 자신은 독립지부를 건립하면 기관당위와 직접 대면하게 되어 각종 회의와 활동에 계속 참여해야 하는데, 이는 사법국과 하나의 지부를 이루어 대부분 일을 사법국이 처리하게 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당원의 조직 관계는 변호사사무소(독립지부 또는 연합지부), 사법국(혼합지부), 원(原) 단위, 도시 가도(街道), 농촌 촌민위원회(村委), 인재교류중심(人才交流中心, 인사부문의 사업단위로서 국가 직제가 없는 인원의 인사관리를 담당), 법률고문단위 등이 될 수 있었다(陳偉強 1995, 7-9).

1998년 4월 현재 항주시는 사법국 당위 아래에 변호사관리처(律管處) 당총지(黨總支)가 있고, 그 아래 다시 5개 당지부(黨支部), 51명 당원이 있었다.⁷⁾ 2002년에 절강성위 서기 장더창(張德江)이 절강(성 직속의) 성운소를 시찰하면서 시변협에 당위를 설립할 것을 지시하였다. 시변협은 시위기관공위(市委機關工委)가 위임관리(歸口)를 하였으며,⁸⁾ 변협 직속의 변호사사무소 당지부는 변협당위가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구와 현에 설립된 변호사사무소 당지부는 현지 사법국당위가 관리하였다. 구현변협이 당무연락원을 두었는데 당무연락원은 현지 사법국당위와 시변협당위의 이중적인 영도를 받았다(吳意 2008, 24). 2002년에 개최된 항주시 제1차 변호사당원대표대회에서 변협당위 서기는 사법국 부국장으로 변호사 업무를 관할하는 방소청(方紹清)이 담임하였다.⁹⁾ 시변협당위 산하에는 13개의 독립 혹은 연합 당지부에 85명의 당원이 있었다(『中國律師』 2008/01, 43).

1998년과 비교해서 2008년 4월에는 당원이 51명에서 448명(전체 변호사의 25%)로, 당지부가 5개에서 66개로 각각 증가하였다. 절강 오련소(五聯

7) 1993년에서 2000년까지는 변협과 사법행정기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같은 인원이 근무하였으며, 회장 혹은 상무부회장을 사법국 영도간부가 겸임하고, 비서장과 비서처 인원을 변호사관리처 인원이 겸임하였다.

8) 변협은 법적으로는 기관단위가 아니지만 실제로는 기관단위와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에 기관공위가 법적으로는 주관단위가 아니지만 사실상 관리를 담당하는 것이다.

9) 방소청은 19세 입대, 32세 제대 후 항주시사법국으로 이동(轉業), 2년 후 제1소로 이동, 다음해에 변호사 자격증 취득, 부주임을 거쳐 1990년 항주시사법국 변호사관리처처장, 1994년 공개 선발(招考) 형식으로 항주시사법국 부국장이 되어 변협 부회장을 겸임하였고, 비서장을 거쳐, 1998년에 변협 회장이 되었다.

所)는 2000년에 ‘합동소’가 되었는데 75명 변호사 중 당원이 13명에 불과하였고 민주당파인사가 14명으로 대만민주자치동맹(臺盟)을 제외한 모든 민주당파의 변호사가 있었다. 6명 고급조합인 중 1명만 당원이었고 3명은 민주당파인사이고 2명은 무당파였다(『中國律師』 2008/06, 21-22). 2007년 말에 항주시는 변호사가 1,446명, 변호사사무소가 133개, 변호사사무소(성직속 변호사사무소 제외) 매출액이 3.7억 위안이었다. 2007년 9월에 개최한 제6차 항주시 변호사대표대회에서는 시변협을 시변협을 현업변호사가 담임하게 하고, 업종 자율관리를 실현하였다. 변호사사무소의 행정속지, 곧 성속, 시속, 구속 변호사사무소를 취소하고 속지 관리 원칙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시변협 당위 서기는 여전히 방소청(시변협 명예회장)이었다(『中國律師』 2008/01, 44; 46).

2007년 말 청도(靑島)시는 변호사사무소가 140개, 변호사가 1,829명이었는데, 당총지가 1개, 당지부가 71개, 당원이 435명(전체 변호사의 24%)이었다. 2001년 변협당위가 설립되었으며, 2004년에 사법국당위가 당규약(黨章)에서 신사회조직(후술) 중 기층 당 조직에 대한 규정에 의거해서 당원이 있는 108개 변호사사무소 중에서 71개 당지부와 14개 연합당지부 - 당지부가 없는 변호사사무소의 변호사로 구성하는 - 를 건립하고, 당원이 없는 변호사사무소에 대해서는 공회와 공청단 조직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공산당의 조직 계통이 변호사사무소를 관리하게 했다(『中國律師』 2008/05, 24). 2008년 강서(江西)성 남방소(南芳所)의 예를 보면 당원 21명, 단원 12명, 민주당파인사 5명이었다. 1995년에 당지부, 1996년에 단지부, 2005년에 공회(工會)와 부녀위원회(婦委會)를 조직하였다. 조합인과 당지부 성원이 공동으로 연석회의를 구성하였다.¹⁰⁾ 이와 같이 국가의 변호사에 관한 통제는 사법행정부문이라고 하는 행정관리와 중국 공산당 조직이라고 하는 ‘정치관리’가 중첩적으로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¹¹⁾

10) 남방소는 1명이 시인대대표, 3명이 시정협대표, 1명이 시당대표로 선출되었다(段飛鳳 2008, 19-20).

11) 이를 ‘당정관계(黨政關係)’라고 한다. 변호사에 관한 관리를 담당하는 공산당 조직은 중앙조직부 조직국6처가 담당한다(『中國律師』 2008/02, 11).

III. 위로부터의 중국 변호사의 정치 참여

1. 인민대표대회 대표와 정치협상회의 위원 참여

변호사의 위로부터의 정치 참여는 인민대표대회(이하 인대) 대표와 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 위원 참여를 들 수 있다. 1988년에 개최된 제7기 전국 인대에서 처음으로 변호사가 전국인대대표로 선출된 이래 변호사의 수가 점차 늘어났다. 1993년에 개최된 제8기 전국인대대표는 변호사가 4명이었다. 1998년에 개최된 제9기 인대대표는 변호사가 6명(제8기 연임자가 2명)이었다.¹²⁾ 신임 변호사 4명은 모두 여성으로 1명은 사법계 추천을 받았고,¹³⁾ 3명은 민주당과 추천을 받았다. 연임자 중 1명도 여성이고 민주당과 추천이었다(『中國律師』 1993/05, 3-4; 1999/06, 22).

2003년에 개최된 제10기 인대에서는 4명의 변호사가 최초로 변호사계(신사회계층대표)의 추천을 받아서 인대대표로 선출되었다. 이들 외에 제9기 인대대표 연임자 4명(여성, 한명은 3선이고, 상임위)을 합하여 제10기 변호사 인대대표는 8명이었다. 역대 가장 많은 변호사 인대대표를 배출하였지만 변호사 인대대표의 수는 전체 인대대표 2,000여 명 중 8명, 인대상위회위원(이하 상위)의 수는 전체 상위위원 159명 중 1명을 차지한 데 불과하였다. 2003년에 변호사계 추천이 등장한 것은 변호사가 후술할 것이지만 ‘신사회계층’에 포함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¹⁴⁾

제10기 전국인대대표인 변호사의 인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中國律師』 2003/05, 7-13). 전국인대대표인 오증영(伍增榮), 장연(張燕), 진자예(陳紫藝), 지봉생, 진서(陳舒), 양위정(楊偉程), 한덕운(韓德云), 허지혜(許智慧)

12) 홍콩변호사 2명을 제외한 수이다. 9기 인대대표에는 겸업변호사인 법학교수가 8명이 선출되었다(『中國律師』 1998/05, 10). 한편 사영기업가에게 할당된 인대대표의 수는 8명이었다.

13) 장연 변호사는 섬서성 사법계에서 유일하게 전국인대대표로 연임되었다.

14) 중개기구책임자가 인대대표에 선출된 하나의 예로서 1998년 1월 제9기 강서성인대대표에서 2명, 1997년 초 제11기 남창시인대대표에서 1명이 있었다. 이들은 전체대표의 각각 0.33%와 0.23%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 중개기구에는 변호사사무소가 포함되지 않았다. 위 예에서의 중개기구는 회계감사사무소, 특허사무소, 부동산중개소 등이었다(蔡定劍 2002, 106-107).

등은 흑룡강(2명), 섬서, 광둥, 산둥, 중경, 북경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이다. 유일한 상위인 오증영은 법관을 역임하고 흑룡강성 사법국 직속 변호사사무소의 주임을 역임했다. 연임자를 제외한 변호사 인대대표는 성·시 변협의 회장(양위정)과 부회장(진서, 한덕운, 허지혜) 출신들이다. 진서와 허지혜는 또한 여변협회장을 역임했다. 진서는 광주시변협 상임비서장을 역임하여 현직 변호사가 변협 비서장에 취임한 최초의 사례를 기록했다. 양위정은 성변협회장·당위부서기와 청도시변협당위부서기였고, 한덕운은 귀국 유학생으로서 시정협위원이었다. 연임자인 장연은 변협상무이사, 진자예는 변협이사이고, 지봉생은 확인되지 않는다. 진자예는 불산시의 한 변호사사무소의 부주임이며, 지봉생은 주임 혹은 부주임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를 보면 이들이 민주당과 등의 추천을 받은 경우로서 변호사 정치에서는 주류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남성인 2명의 변호사인 양위정과 한덕운은 각각 성인대입법고문과 시인대입법고문을 역임했다. 2003년에 허지혜는 청년연합회(이하 靑聯) 위원이었다. 변호사 가운데 성급인대대표로는 49명이 선출되었다(『中國律師』 2003/05, 18). 이 가운데 장연(張燕)이 전국인대대표로 선출되었다. 북경시 인대대표가 된 유흥우(劉紅宇, 여성)는 최초로 변호사계 추천으로 인대대표가 될 수 있었다.

2008년에 개최된 제11기 전국인대대표로 당선된 변호사의 수가 11명으로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6명이 비당원이었다.¹⁵⁾ 전국인대대표로는 연임대표가 5명(양위정, 한덕운, 지봉생, 진서, 허지혜), 신임대표가 6명이었다. 제11기 변호사 신임 인대대표의 인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中國律師』 2008/04, 11-16). 유령(劉玲), 손계령(孫桂玲), 고명근(高明芹), 팽설봉[彭雪峰, 북경 대성소(大成所)], 진희연(陳希燕), 저영기(邸玲琪) 등은 강소, 흑룡강, 산둥, 북경, 호남, 하남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이고, 성변협상무이사(유

15) 제11기 전국변협위원인 변호사의 수도 11명이었는데 8명이 비당원이었다. 북경시의 변호사의 예를 보면 시 인대대표 6명 중 4명이 비당원이었고, 시정협위원 8명 중 6명이 비당원이었다. 같은 시기 북경시의 구·현인민대표 변호사가 11명, 정협위원이 41명이었는데 역시 대부분이 비당원이었다(皮劍龍 2009, 57). 이를 보면 변호사 대표와 위원은 대부분이 비당원 할당액과 중복되어 추천받았으며, 인대대표보다는 정협위원에서 비당원 비율이 약간 더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국과 시 규모에서는 변호사 인대대표와 정협위원의 비율이 유사하지만, 구·현 규모에서는 변호사 정협위원이 변호사 인대대표보다 훨씬 더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령, 고명근, 저영기, 유령은 또한 염성시변협부회장, 북경시변협부회장(풍설봉), 전국변협권리수호위원회부주임(진희연) 등을 담임하고 있으며, 성정협상위(저영기, 성법학회부회장), 하얼빈시정협상위(손계령) 등을 담임하고 있다. 저영기는 정법관리간부학원형법실주임으로 겸업변호사이다. 유령과 고명근은 직공 인권과 법률구조에 공헌이 탁월하였다. 유령은 염성시 신사회계층대표인사친목회 회장을 역임했다. 청련위원으로는 허지혜, 유령, 풍설봉(시청련상위감사장) 등 3명이 있었다. 민주당파로는 손계령(9·3학사 하얼빈시위부주위), 풍설봉(중앙통전부 획득), 유령(농공민주당) 등이 있었다. 진희연은 양위정의 경우와 같이 국무원정부특수수당 대우를 받는다.

2013년에 개최된 제12기 전국인대에서 변호사계에 할당된 대표의 수가 14명으로 약간 증가하였다. 전국인대대표로 당선된 변호사는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12년 말 중국의 변호사는 230,105명이었는데 여성 변호사가 61,717명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하였다(『中國律師』 2013/05, 30). 전국인대대표는 여성 변호사가 5명으로 약간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것은 변호사가 여성의 할당액을 통해서 대표의 수를 늘렸음을 시사한다. 연임대표가 6명(오증영, 진희연, 고명근, 유령, 진서, 한덕운, 4명은 3선, 2명은 2선), 신임대표가 7명이었다. 신임대표는 이대진(李大進, 北京天達所), 채학은(蔡學恩), 오청(吳靑), 주열옥(朱列玉), 염건국(閻建國) 등 5명의 인적 사항이 확인된다(『中國律師』 2014/04, 13). 이대진은 전국변협부회장, 북경시변협회장, 북경시인대 상위였으며, 진희연은 전국변협 상무이사, 오증영(전국부녀전국대표대회 대표), 양위정, 유령은 각각 흑룡강성, 강소성, 산둥성 변협회장이었고, 진서는 광주시변협 명예회장(『廣州律師』 잡지사 주편), 채학은은 무한시변협부회장, 염건국은 북경시동성구(東城區) 변협부회장이었다. 오증영은 전국여성변호사위원회 부주임, 오청은 광동성 변협여성변호사위원회 주임이었다. 이대진은 공산당원, 염건국은 민주당파(九三學社 중앙위원)였다. 진희연과 오청은 전국청련위원(진희연은 호남성 청련부주석)이었고, 주열옥은 광동성 지식계인사친목회 회장이었다.

다음으로 정협위원을 살펴보자. 1993년에 개최된 제8기 정협에서 최초로 ‘신사회계층인사’가 정협위원으로 선출되었지만 변호사는 정협위원에 선출되지 못하였다. 1998년에 개최된 제9기 정협에서 어떤 위원이 변호사

계별(界別)을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지만 이루어지지 못했다. 2003년에 개최된 제10기 정협에서 최초로 4명의 변호사가 위원으로 선출되었다(『中國律師』 2003/05, 14).¹⁶⁾

제10기 전국정협위원인 변호사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고종택(高宗澤), 이한우(李漢宇), 하열(何悅), 오덕립(吳德立) 등은 북경, 귀주, 천진, 호북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이다. 이한우는 성정협위원과 귀양시인민대표를, 하열은 시정협위원을, 오덕립은 심천시 제1기와 제2기 인대상위를 역임했다. 유일한 여성인 하열(전업변호사로 있다가 남개대학법학원 교수가 되었다)은 시청련위원이고 민주당파(치공당시위부주위)였다. 변호사 가운데 성급정협위원으로는 99명이 선출되었다. 한덕운, 이한우 등이 전국정협위원으로 선출되었다(『中國律師』 2003/05, 19). 북경에서는 변호사계별로서 최초로 5명의 변호사가 시정협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물론 변호사 추천권은 변협이 아니라 사법국이 가지고 있었다(『中國律師』 2003/03, 15-17).

제11기 전국정협위원으로 당선된 변호사의 수는 11명이었고, 신임위원이 8명, 연임위원이 3명(하열, 오덕립, 왕림)이었다. 제10기 신임 정협위원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녕, 마호성, 왕준봉(王俊峰), 유홍우, 주정부(朱征夫), 법제마(法帝瑪), 단기화(段琪華), 시걸(施杰) 등은 북경(3명), 청해, 광둥, 신강, 상해, 사천 등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이다. 이들은 성인대표(마호성), 북경시인대대표(유홍우), 탐성시인대대표(법제마), 성정협상위(마호성, 주정부), 성정협위원(법제마, 시걸), 변협회장(우녕), 성변협부회장(주정부, 시걸), 변협전문위원회주임(유홍우, 상업은행법률사무위)와 위원(마호성, 형위회) 등을 역임하였다. 마호성은 회족, 법제마는 우즈벱족이었다. 마호성은 청해성의 신사회계층 가운데 유일한 정협위원이었다. 청련위원으로 양준봉(상위), 유홍우, 법제마(자치구위원), 시걸(성상위) 등이 있었다. 시걸은 군대정법계별 주임이었다. 유홍우는 북경시공상련, 시걸은 민주당파인 민주축진회(民進) 성위 상위이고, 단기화는 화교로 ‘해외귀국자’

16) 변호사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수가 달라질 수 있다. 호북성황석 시법률구조센터주임인 왕림(王林)을 변호사에 포함시키기도 하였는데, 법률구조센터주임은 사법행정기관 내부의 인사이동 코스의 하나이다. 왕림이 법률구조센터주임이 되기 전에 역임한 시경제소, 시소(시사법국 또는 시변협이 직접 관할)에 직접 부주임 등의 직책도 마찬가지이다.

었다.

제12기 전국정협위원으로 당선된 변호사는 12명(여성 6명)이었고, 연임 위원이 8명(하열, 왕준봉, 유홍우, 단기화, 주정부, 시걸, 마호성, 법제마)이고,¹⁷⁾ 신입위원이 4명(무당파인사가 3명)이었다. 신입위원 중 팡설봉은 제11기 전국인대대표를 역임하였으며,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명(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 변호사 중에 한 명으로 추천된 엘리트 변호사였고, 팡정(彭靜, 중경 靜升所)은 무당파인사로 제10기 전국부녀대표, 9기와 10기 전국청련위원, 중경시청련부주석, 공상업연합회(총상회)상위, 중국국제상회중경상회 부회장, 신사회계층전업인사연합회 상무이사, 시민영기업가연합회 부회장, 시중개인협회 부회장, 시여성기업가협회 부회장, 화상회(華商會) 상무이사, 청년기업가협회 부비서장, 서남정법대학 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황렴희[黃廉熙, 절강 천책소(天冊所)]는 화동정법학원 교수이고, 성정협 상위를 역임하였으며, 반효연(潘曉燕)은 신장위구르자치구변협부회장, 신장건설병단변협 부회장, 구변협 여성변호사위원회 주임(법제마는 위원), 구변협정치참여(參政議政)협조위원회 주임(법제마는 위원), 구정협위원 상위, 구부련(婦聯)부녀권익보장위원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마호성은 당외지식인친목회 상무이사, 청해(靑海)성변협부회장을 역임하였으며, 법제마는 전국변협여성변호사친목회 집행위원, 신장위구르자치구 교련(僑聯)대표를 역임하였다.

인대대표나 정협위원보다도 더 중요한 정치 참여는 중국 공산당대표대회 참가이다. 2007년에 개최된 제17차 중국 공산당전국대표대회에서 변호사 3명이 최초로 대표로 선출되었다. 이들은 중경시(변협회장, 여성), 산둥성, 안휘성의 변호사였다. 중경시 대표는 이미 2002년에 전국에서 최초로 변호사로서 시당대회의 대표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산둥성은 2004년 5월에서 전국 최초로 신사회계층당외지식인연의회를 창설하였는데 8명 부회장 가운데 6명이 변호사였고, 이사 114명 중 변호사가 반 이상을 차지했다(『中國律師』 2008/02, 19). 변호사 대표 3명은 17대 전체대표 2,217명 중에 그 존재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17) 왕준봉은 2012년에 전국변협 회장에 선출되었다. 하열은 2007년에 천진대학법학과 교수로 부임하고, 치공당(致公黨)천진시위 부주위, 중앙법제연구회 부주임, 중앙부녀위원회 부주임을 역임하였다.

2. 위로부터의 변호사의 정치 참여의 배경: '신사회계층'

간선으로 선출되는 성급과 전국 인민대표대회와 정협에서 인민대표와 정협위원으로 당선된 변호사의 수가 약간 증가한 배경에는 중국 공산당의 정책이 변호사를 포함한 '신사회계층'의 정치 참여를 개선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원래 '신사회계층'이라는 용어는 2001년에 장쩌민이 중공 건당 80주년 기념식에서 한 '7·1연설(3개대표론'으로 유명하다)'에서 처음 등장했다. 『북경과기보(北京科技報)』에서 2001년 9월 24일과 10월 1일에 각각 "중국특색사회주의건설자(상)", "신사회계층은 중국특색사회주의 건설자이다(하)"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적이 있었다. 2002년 11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16차대표대회(이하 16대) 보고에서 민영기업의 관리인원 및 사영기업주 등 사회계층도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건설자라고 하고, 따라서 그들의 합법적인 노동과 비노동 수입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제출했다.

2006년 7월에 중공중앙이 2000년 이후 최초의 전국통전사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대표성과 정치 참여(參政議政) 능력을 갖춘 당외대표 인사를 배양한다는 결정을 했는데, 이 당외대표인사에는 분명히 신사회계층이 포함되어 있었다. 중앙통전부의 사업은 주로 어느 정도의 자산 규모, 정치 소양, 대표성을 갖춘 인사와 일반적인 비공유경제인사에 놓여 있는데 후자는 주로 각지의 공상련(工商聯)과 협조하여 전개하고, 중앙통전부는 주로 전자와의 통전 사업에 치중하였다. 2004년부터 중앙통전부가 신사회계층인사이론연구반을 개설했다. 2006년에는 중앙통전부가 운영하는 '중앙사회주의학원 추계반' 3개 반 중에 36명으로 이루어진 신사회계층인사이론연구반이 개설되었다. 이 반은 신사회계층 중에서 통전부의 간부를 양성하기 위한 연수 과정으로 설치되었다(『第一財經日報』 2006/09/12).

중공중앙이 2006년 11월에 '신세기 신단계 통일전선을 공고히 하고 장대하게 하는 데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신사회계층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개혁개방 이래 출현한 신사회계층은 주로 비공유경제인과 자유직업자 지식인으로 구성되고, 신경제조직, 신사회조직(이를 '양신(兩新)' 조직이라고 한다) 중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신사회계층은 통일전선 사업의 새로운 중점이다. 최대한도로 그들을 당의 주위에 단결시키고 그들의 작용

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부단히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역량을 응집시켜야 한다.¹⁸⁾

통전부는 사영기업이 450만 개, 투자자가 1,100만 명, 자유직업자가 약 1,000만 명으로 신사회계층이 모두 5,000만 명이며 신사회계층과 그 종업 인원이 1.5억 명(전체 인구의 11.5%)을 초과하며, 이들은 10만억 위안 정도의 자본을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전국 반수 이상의 기술 특허를 사용하며,¹⁹⁾ 직접 혹은 간접으로 전국 근 3분의 1의 세수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하였다. 2006년에 통전부는 자신의 사이트에 비공유제경제인 난을 신설하였다. 이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신사회계층에서 비공유제경제인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다만 자유직업자 지식인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나의 예를 들면 2005년에 중앙통전부 등이 두 차례 중국 특색 사회주의사업건설자 선발을 하면서, 처음에는 모두 사영기업주를 선발하였지만, 두 번째는 99명 가운데 11명은 신사회계층 중의 자유직업자 지식인이었다. 2006년 8월에 중앙통전부가 변협·공인회계사협회 등이 참가하는 신사회계층인사 통전사업연석회의제도를 설립했다. 2007년 1월에는 단체회원에 부동산감정사 중개인화회를 추가했다.

신사회계층은 민영과학기술기업의 창업인원과 기술인원, 외자기업에 초빙된 관리기술인원, 자영업자, 사영기업주, 중개조직의 종업인원과 자유직업인원 등 6개 부류로 규정했다. 변호사는 이 가운데서 중개조직의 종업인원에 속한다. 중개조직은 다시 시장 주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구로 변호사사무소, 공인회계사사무소, 각종 시장 교역활동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인 조직으로, 상품교역, 금융선물시장과 부동산의 중개인, 업종협회, 동업공회, 상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6년 9월 현재 중개조

18) 신사회계층과 그들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신재부(新財富)'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현대 시장경제와 법제사회에서는 사인 자본이 점하는 대부분의 생산 혹은 발전 자본은 신사회계층의 명의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공유자본이다. 그들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10만억 위안 사인 자본 중에 2만억 위안(실제로는 이에 이르지 않지만)이 생활 소비에 사용된다고 해도, 나머지 8만억 자본은 국가에 세수를 제공하고 사회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민 재부를 창조한다. 이러한 자본 순환이 '눈덩이 효과'를 가져온다(『人民網-廣州日報』2007/06/20).

19) 민영과학기술기업은 20만 개가 되지 않지만 30%의 과학기술자원을 사용하여 70% 이상의 과학기술성과와 특허기술을 창조한다.

직 전문인 가운데 전국인대대표, 전국정협위원을 담임하는 사람이 10여 명이었다(『第一財經日報』 2006/09/12). 이를 보면 신사회계층 중 중개직업 종사인원 중에서는 변호사의 비율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2008년 4월 중경시가 신사회계층전문직연합회(간칭 新專聯)를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하였다.²⁰⁾ 이 단체는 당과 정부가 신사회계층과 협조하는 교량과 유대이며 신사회계층을 당과, 정치, 실직, 사회에 배치하는 제도이다. 이 단체에는 현재 변협, 공인회계사협회, 자산감정사협회, 광고협회, 국토자원건물감정중개협회, 경매업협회, 민영과기기업연합회, 외국인투자기업협회, 중개인협회 등 8개 단체 회원과 고급지식인을 위주로 하는 158명 개인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전련은 공상련과 함께 신사회계층 통전 사업을 아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전련을 관리하는 부서는 시위 통전부지식인사업처이다. 중경시의 경우 최대 규모의 변호사사무소라고 해도 종업인원이 수십 명에 불과하므로 변호사가 공상련에 가입할 자격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전련을 통해서 변호사가 인대대표와 정협위원을 담임할 수 있게 되었다.

중경시의 경우는 현재 시급 이상 인대대표와 정협위원 중 변호사가 9명에서 17명으로 증가하였다. 중경시는 전국인대대표 1명, 시인대대표 7명, 시정협위원 9명, 구현 인대대표가 104명으로 사회개업 변호사의 4%가 각급 인대대표로 선출되어 변호사의 인민대표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신사회계층의 일원인 광고계 인사는 2명에서 6명으로 증가하여 증가율이 변호사보다 더 높았다(『中國律師』 2008/03, 31-33). 인대대표 비율에서 변호사가 광고계 인사보다 3배가 채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여전히 변호사의 정치 참여의 한계를 보여준다.

변호사는 성급인대상위에 5명(북경, 하남, 섬서, 호북, 복건)이,²¹⁾ 성급정협상위에 17명이 선출되었다. 변호사가 성급인대대표에 가장 많이 선출된

20) 중경시는 2005년 5월에 입법조사연구과제조를 설립하였다. 이 과제조는 사법국부 국장 겸 시변협당위서기가 영도하고, 변협부회장 한덕운이 조장, 참정의정위원회 주임(시인대대표)과 변협비서장이 부조장을 담당했다. 참정의정위원회에는 변호사 대표위원이 22명(당외지식인이 18명)이었다. 중경시는 전국인대대표 1명, 시인대대표 7명, 시정협위원 9명, 구현 인대대표가 104명으로 사회개업 변호사의 4%가 각급 인대대표로 선출되었다(『中國律師』 2008/03, 31-33).

21) 섬서는 전국인대대표인 장연(張燕) 변호사이다.

지역은 상해(10명), 중경(9명), 북경·절강·사천(6명)이고, 성급정협위원회 가장 많이 선출된 지역은 신강(19명), 중경(15명), 상해·광둥·광서(11명), 산서·산둥(10명), 사천(9명), 북경(8명)이다(『中國律師』 2008/03, 23-27). 상해는 인민대표의 경우에는 신입과 연임(변협부회장, 변협회장을 포함해서)이 각각 5명이고, 정협위원의 경우에는 신입이 7명, 연임이 4명이었다(『中國律師』 2008/03, 19). 11명 시정협위원은 사회과학계별(전체는 44명)에서 6명(전체의 13.6%)이 충원되고, 나머지 5명은 민건(民建, 민주당파), 총공회, 교련(僑聯), 대외우호 등 계별에서 충원되었다.

북경의 경우에는 전임 변협회장이 시인대상위에, 변협부회장이 시정협상위에, 차액선거를 거쳐 선출되었다.²²⁾ 유흥우(여성)는 북경변호사 중 최초로 시인대대표에 선출되었다가 이번에는 신사회계층 ‘계층할당(界別, 5명)’로 시정협위원으로 선출되었다(『中國律師』 2008/04, 8). 2008년 말 북경 변호사는 18,635명이지만 선거권을 가진 변호사는 7,000명이 넘지 않는다. 따라서 시인대대표의 비율인 주민 1만 명에 대표 1명으로 보면 변호사는 평균보다는 더 많이 대표를 배출한 셈이다(『中國律師』 2008/03, 11). 그러나 이 주장은 사실 중국 변호사의 정치 참여가 아니라 그 반대의 증거임은 말할 것도 없다.

신사회계층에서 정치 참여가 가장 활발한 집단은 사영기업주이다. 이들을 변호사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중공당원의 비율은 사영기업주가 32.2%이고, 변호사는 많아야 3분의 1을 차지한다.²³⁾ 전국 현급 이상 인대대표는 사영기업주가 9,000여 명이고, 변호사는 849명이고, 정협위원은 사영기업주가 약 30,000명이고, 변호사가 2,571명이다(『人民日報』 2007/06/11; 『中國律師』 2008/06, 92). 사영기업주와 비교해서 변호사의 정치 참여가 미약함을 알 수 있다. 전국인대대표와 정협위원으로 당선된 변호사의 수가 약간 증가한 것은 신사회계층의 일원으로서 인대대표와 정협위원의 직업 계층별(界別) 할당액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었지만, 신사회계층 할당액

22) 호북성은 변협부회장이 성정협상위, 감사장이 성인대상위에 선출되었고, 상해건위소무한분소의 한 변호사는 호북성에서 최초로 중공당원 신분으로 성정협위원에 선출되었다(『中國律師』 2008/03, 21).

23) 전국적인 변호사 당원의 수는 확인할 수 없다. 일부의 예를 보면 산둥성이 근 9,000명 중 3분의 1(2008년 3월), 심천시가 근 3000명 중 900명(2003년 7월), 청도시가 당원변호사가 435명으로 24%(2007년 말)이다.

의 주요한 수혜자는 변호사가 아니라 사영기업주였다. 사영기업주는 보통 ‘이익단체 정치’를 통해서 정치에 참여하지만, 중국에서는 이익단체의 정치가 발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당정치’의 틀로 사영기업주를 통합하기 위해서 그들에 대한 인대대표와 정협위원의 할당액을 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실 정당 정치가 참가하는 입법(과 감독) 기관은 ‘입법’이라는 점에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이다. 변호사의 ‘양회’ 참여가 미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대대표와 정협위원인 변호사들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변호사를 대변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변호사의 위로부터의 정치 참여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변호사는 또 다른 정치 참여의 통로를 찾아야 한다. 그것은 아래로부터의 정치 참여, 곧 ‘사회운동의 정치’이다.

IV. 아래로부터의 중국 변호사의 정치 참여

1. 변호사의 구·현 인민대표대회 경선 참여

2003년에 변호사의 정치 참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당파나 계별의 추천을 받아서 인대대표 또는 정협위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구민 10명 이상 연명 추천’ 또는 ‘자천’으로 인대대표가 된 변호사가 2003년 12월 북경시의 구인대대표 선거에서 나타났다. 북경의 구인대대표 선거에서는 그해 4-5월 심천에서 발생한 구인대대표 경선의 영향을 받아서 구인대대표에서 더욱 조직적인 경선활동을 전개하였다. 경선자 중에서는 주택소유자(業主) 운동가와 함께 변호사의 활동이 두드러졌다.²⁴⁾

24) 심천과 북경에서의 구인대대표 경선에 참가한 자천 후보자 중에서는 주택소유자 운동가가 심천 3명, 북경 5명이 있었다. 북경시의 주택소유자운동가 5명 가운데는 주택소유자위원회 주임 2명(한 명은 중국사회과학원 부연구원)이었고, 부주임이 1명(대학원생)이 있었다. 나머지 2명 중 한 명[가짜 상품 신고(打假) 영웅으로 불리는 왕해(王海)]은 유명한 소비자운동가였고, 다른 한 명은 부동산권리수호 전문 변호사 진병(秦兵)이었다(이동진 2007, 78-81). 언론에 보도된 북경시의 구·현인대대표 경선에 참가한 사람들은 20명이었다.

북경시의 구인대대표 경선자인 변호사의 배경과 선거 참여 동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鄒樹彬·唐娟·黃圍平 2004, 35). 진병(秦兵), 허지영(許志永, 北京郵電大學), 갈금표(葛錦標, 北京工商大學), 동려화(修麗華), 장성수(張星水), 두조용(杜兆勇, 법학박사) 등 6명의 변호사가 확인되는데, 이들은 전업변호사가 3명, 강사가 2명(허지영, 갈금표), 기자가 1명(두조용)이었다. 비전업변호사는 모두 법학박사이다. 허지영을 제외하면 모두 비당원이었다. 동려화는 변호사사무소(致誠所) 주임이고, 청소년법률구조연구센터 주임으로 저명한 변호사에 속하였다.²⁵⁾ 허지영은 2003년 4월에 발생한 ‘손쯔강 사건’ 와중에 수용견송제도에 대해 위헌 심사를 인대상위회에 제청하여 일약 유명해졌다(이동진 2005). 허지영, 장성수, 두조용 등은 또한 2003년에 발생한 ‘손대오(孫大午, 민간기업가) 사건’의 변호사를 담임하였다.²⁶⁾ 두조용 등은 또한 국무원이 제정한 ‘불법금융기구와 불법금융업무활동 단속 조치’에 대해서 위헌심사를 전국인대상위회에 제청하였다. 허지영과 장성수는 2003년 10월에 민간공익단체인 양광헌도(陽光憲道)사회과학연구센터(약칭 陽光憲政)를 설립했다.

진병은 ‘상품주택매매계약’을 제정한 주택권리 옹호활동으로 유명하였는데, 부동산 교역의 안정성 권리 수호를 출마 동기로 내세웠다. 갈금표는 지적재산권 법률소송 전문 변호사였다. 동려화는 미성년자를 위해 담배회사에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등 미성년자 권익 옹호활동에 종사하고 전업변호사무료전화법률상담을 최초로 실시해 왔는데, 개인의 권리 수호를 출마 동기로 내세웠다. 갈금표는 “일어서는 것이 곧 승리이다”, 허지영·장성수·두조용은 “행동으로 법치 진보를 추진한다”를 각각 자신들의 출마 동기로 표현했다. 허지영은 선거 중에 학생선거운동(助選團)자원활동가들의 지원을 받았다. 심천시 구인대대표 경선행동에서는 일부 변호사가 막후에서 전략을 짜는 데 그쳤던 반면에 북경시 구인대대표 경선행동에서는 변호사가 막후에서 무대로 나왔으며 매우 큰 활약을 펼쳤다(鄒樹彬·唐娟·黃圍平 2004, 37; 41).

25) 동려화는 북경시 인대대표로 선출되었다(『中國律師』 2008/03, 11).

26) 손대오는 500대 민영기업의 하나인 하북대오(河北大午) 집단대표로서 인터넷에서 정부의 농촌금융정책을 비판한 것이 빌미가 되어 ‘공중저축비법흡수죄’로 기소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북경 경선에 참가한 6명 변호사들은 모두 인터넷에 사이트를 개설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신문과 잡지에 경선강령을 발표하거나 (학생)선거운동단을 설립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공공 언론과 ‘공공 지식인’들의 활동으로 선거가 하나의 공론장으로 될 수 있었다.²⁷⁾ 이를 한 경선 참가자는 ‘공공 선거’라고 불렀다. 경선에 참가한 한 변호사는 주택소유자운동과 소비자운동 활동가와 함께 공동으로 선거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대학 강사인 허지영과 갈금표가 2003년 11월에 각각 정식후보자와 비정식후보자로써 각각 당선되었다(陳文 2004, 13-42; 中岡まり 2011, 7-8).²⁸⁾

2006년의 구·현인대선거에서도 2003년과 마찬가지로 민간독립인사가 선거에 참여했지만 3년 전보다 더욱 심한 압제를 받았다. 2006년에는 민간 인터넷 사이트가 폐쇄되고 ‘상세기중국(象世紀中國)’과 같은 명성이 높은 학술 사이트도 폐쇄되었다. 그리고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異議人士)과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維權人士)을 체포하고 심지어 그들의 가족들을 위협하고 그들의 변호사에 대해서도 간섭을 했다. 2006년이 2003년과 비교해서 정치 상황이 훨씬 나빴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자유주의 인물인 이신지(李慎之, 전 사회과학원 부원장)와 하가동(何家棟, 전 공인출판사 사장)은 2003년 4월과 2006년 10월에 각각 사망하였는데, 친지들이 이신지기념문집을 발간하고 주변에 배포할 수 있었지만, 하가동문집은 발간하려고 하였지만 당국에 의해서 몰수당하여, 2011년 11월 사망 5주기가 되어서야 문집을 발간할 수 있었다.²⁹⁾

2006년 선거에서는 2005년에 창설된 중국범람연맹(中國汎籃聯盟, 중국 국민당 지지) 성원 다수가 참가했다. 이외에 언론의 보도를 받은 사람은

27) 공공지식인(公知)은 인권수호활동가(維權人士), 민주화운동활동가(民運人士), 저항활동가(異議人士) 등을 포함한다.

28) 심천에서는 주민위원회 주임으로 주택소유자운동의 일환으로서 선거에 참여하였던 섭해량(聶海亮)이, 그리고 북경에서는 TV 사회자였던 사마남(司馬南)이 정식 후보자로써 당선되었다.

29) 두 사람은 『中國的道路』(南方日報出版社, 2000)를 출판하였다. 두 사람의 문집이 인터넷 사이트인 ‘박신(博訊) 공민논단(公民論壇)’에 게재되어 있다[『現實中國』 2007/01/09; 新唐人電視台 (2014), “幫中共洗腦的「大師」何家棟悲劇人生(圖),” <http://big5.soundofhope.org/node/477295>. (2015년 11월 10일 검색)].

북경의 에이즈 인권활동가 이단(李丹), 심천의 주택소유자운동가 추도(鄒濤) 등이 있었다.³⁰⁾ 허지영과 진병이 다시 선거에 참가하였지만 큰 주목을 끌지는 못하였다. 허지영은 다시 해전구북우(海澱區北郵)선거구에서 재선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인대대표 경선 참가 자체가 의의가 있는 것이지만 인대대표가 되었다고 해서 의미 있는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허지영은 ‘양광헌정’이 북경시민정국으로부터 등록되지 못했기 때문에 ‘공맹자순(諮詢, 컨설팅)유한책임회사(약칭 公盟)’로 개명하고 북경시공상국에 등기를 했다. 2009년에는 대학에서의 강의자격을 박탈당하였고, 같은 해 7월 세무국으로부터 공맹이 142만 위안의 벌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어서 경찰에 의해 구류된 상태에서 검찰에 의해서 탈세죄로 기소되었다. 2010년에 공맹은 조직 명칭을 ‘공민승낙(公民承諾)’으로 고치고 신공민운동을 제창하였다. 허지영은 2011년 11월에 실시된 구인대 경선에도 참가하였지만, 당국의 방해로 정식의 후보자 명부에 들어가지 못하고 낙선하였다.³¹⁾

허지영 등은 2012년 5월에 ‘공민승낙’을 다시 ‘신공민운동’으로 개명하였다. 허지영은 2012년 11월 공산당 총서기에 취임한 시진핑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국가의 운명에 대해-공민의 생각’을 발표했다가 북경시공안국 국보(國保, 국내안전보위총대)인원에게 연행되었다. 2013년에는 홍콩에서 개최되는 ‘손쯔강사건 10주년 심포지엄’에 참가하기 위해 공항에 갔다가 연행되어 가택연금 상태에 처해졌으며, 2013년 7월 공공질서소란혐의로 구류를 받았다. 허지영은 8월에 정식으로 구속되고, 12월에 기소되어, 2014년 1월에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³²⁾

30) 추도는 1999년부터 농민공 인권옹호운동에 참가하였다. ‘심천부약조곤망(扶弱助困網)’을 설립하였으며, 나호구(羅湖區) 인대선거에 참가하였을 뿐 아니라 초포서사구(草埔西社區) 주민위원회 주임선거에도 참가하였다. 그는 개적논단(凱迪論壇)에서 경선에 참가한다는 공개서한을 게재하였는데 2일 만에 1만여 명이 방문하자 곧 사이트 전체가 폐쇄되었다. 未來中國(www.cdposc.org), 新唐人電視(www.ntdtv.com), 자유아시아방송(www.rfa.org) 등을 참조하라. 추도는 2006년 4월 주택구매연맹 사이트에 3년간 ‘주택불매’운동을 전개했다. 이 사이트는 폐쇄되었다.

31) 북경우전대학(北郵) 학장인 방빈흥(方濱興)이 16,000여 표를 얻었던 반면에 ‘정식 후보자’ 명단에 들어가지 못한 허지영은 ‘다른 사람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3,500여 표를 얻는 데 그쳤다.

2. 아래로부터의 변호사의 정치 참여의 배경: 2003년과 2007년

2003년은 중국 언론에서 ‘시민권리의 해’, ‘새로운 민권 행동의 해’ 등으로 불렸을 정도로 시민의 인신권리와 재산권리를 신장하는 행동이 유독 많았던 해였다. 예를 들면 SARS 사건, 수용견송제도, 노동교양제도, 가옥 강제철거, 토지징용보상 등에 대한 질의, ‘B형간염 차별’로 인한 행정소송, 자발적인 헌법 가두선전 행동, ‘손대오사건’ 지원, ‘주택소유자 혁명’, 농민 공의 연말 임금인상 행동 등이 그것이었다. 인민대표 경선운동도 인권옹호 행동의 표현 형식 중의 하나였다.

2003년에 폭발한 공민 행동은 2002년 중국 공산당 제16대에서 출범한 새로운 지도부가 ‘신권위주의’에서 ‘신민본주의’로 이행하는 흐름에 호응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16대에서는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치체제 개혁을 추진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을 힘써 건설하며”, “민주제도를 건전하게 하고, 민주형식을 풍부하게 하며, 공민의 질서 있는 정치 참여를 확대시킨다”라고 하였으며, 연말에 제출한 ‘헌법수정안’에는 “공민의 합법적 사유재산은 침해받지 않는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물질문명, 정치문명, 정신문명의 협조와 발전을 추동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그리고 2002년 12월 말에 중앙정치국이 헌법을 집단으로 학습하였다(『中國律師』 2003/06, 43).

중국 공산당 신임지도부가 헌법을 중시하게 된 데는 배경이 있었다. 1990년 산둥성 등주(藤州)시에 거주하는 등주8중학교 졸업생 제옥령(齊玉苓)이 중등전과학교(中等專科, 中專)예선고시와 통일입학(招生)고시에 합격하여 제녕(濟寧)상업학교 재회반(財會班)에 합격하였다. 그런데 제의 동학인 진모가 중전예선고시에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촌지부 서기인 부친이 등주8중, 제녕상교, 등주시교육위원회의 행정인원과 결탁하여 제옥령의 명의로 제녕상교에 입학하고, 제는 떨어졌다. 제는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인해서 재수를 하지 못하고 취업을 해야 했다. 나중에 제는 6000위안을 빌려서 허커우(戶口)를 사서 추성기공(鄒城技工)학교에 입학하였다. 진

32) 維基百科, “許志永,” <https://ja.wikipedia.org/wiki/%E8%A8%B1%E5%BF%97%E6%B0%B8>. (2015년 11월 10일 검색). ‘신공민운동’에 대해서는 陳宜中(2015)의 논의를 참조하라.

모는 졸업 후 중국인민은행에 취업을 하였고, 제는 노남(魯南)철합금(鐵合金)공장에 취업하였다가 인원감축으로 해고(下崗)를 당하였다. 1999년에 진상이 밝혀져서 제는 진모, 진모 부친, 원 소재학교를 고소하였다.³³⁾ 최고법원이 2001년 7월 내린 승인회답(批復)에서 피고가 성명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원고가 헌법 규정에 의거해서 교육을 향수하는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해석하였다(『中國律師』 2003/06, 47).

2001년 8월에는 산둥성 청도시의 그해 고등학교 졸업생 3명이 산동덕형(山東德衡) 변호사사무소의 2명 변호사와 함께 국가교육부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인 교육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이는 전국 각 성·시의 합격점수가 상이한 것을 지적한 것이었다. 이러한 제도에서는 산동의 학생은 북경 학생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고서도 북경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기가 어려웠다. 이 사건은 사법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리고 2002년 1월에는 사천대학교법학원 98학번 학생 장모가 중국인민은행 성도(成都)지점을 키를 제한하여 국가기관공직시험에 참가하는 자격을 제한한 데 대해서 헌법의 평등권 침해로 고소하였다. 그리고 2003년 1월에는 중국율사(中國律師) 잡지와 산동덕형 변호사사무소가 주최하고, 법률서비스시보, 중국변호사네트워크(中國律師網)가 협찬하고, 유럽연합 중국인권소형항목기금이 후원하는 ‘시민권리 사법보호 이론과 실천’이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거행되었다.

2003년 4월에 광주에서 순쯔강사건이 발생하자 그해에 북경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허지영 등 3명이 전국인대상위회에 수용견송제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가를 심사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순쯔강사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북경시변협과 청화대학이 연합하여 설립한 청화대학헌법시민권리센터가 최초로 순쯔강사건에 법률구조를 제공하게 되었다(『中國律師』 2003/07, 63). 순쯔강사건 1심이 선고된 다음날 북경시변협 헌법인권전문위원회와 천칙(天則)경제연구소, 청화대학 헌법시민권리센터가 ‘순쯔강사건 1심 후의 법률 사고’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50여 명의 참가자들은 “순쯔강사건의 발생은 우리 사회의 치욕이고

33) 維基百科, “齊玉苓案,” <https://zh.wikipedia.org/wiki/%E9%BD%8A%E7%8E%89%E8%8B%93%E6%A1%88>. (2015년 11월 10일 검색).

우리 모든 시민의 치욕이다. 유사사건이 빈발하는 것은 우리의 수용견송 제도가 문제가 있음을 설명한다. 쑨즈강사건이 헌법개혁의 한 돌파구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공민 권리 신장을 위한 행동은 ‘남방도시보(南方都市報)’와 같은 언론의 신속하고 심층적인 보도와 인터넷매체와 인터넷 논단의 흥기와 맞물려서 여론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와 학자(법학자를 포함하여)와 같은 ‘공공 지식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수용견송제도의 철폐를 가져온 허지영 등이 이에 속하였다.³⁴⁾

2007년도 중요한 해였다. 이 해는 ‘시민참여의 해’, ‘사회입법 원년’ 등으로 불렸다. 이해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17대에서는 ‘참여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시민 참여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하문(廈門)시의 PX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건설적인 시민 참여’ 모형으로, 질서가 없는 정치운동, 집단적 사건, 과격한 ‘관민 충돌’과 구별된다. 이 사건은 시민의 이익 호소, 참여 형식으로서의 산책과 같은 시민 참여에 대해 정부가 급시에 제도적인 대응을 제시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계획하고, 시민좌담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화 참여 방식을 제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시민 의견에 근거해서 공장 이전을 결정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최초로 환경영향평가제가 실시되었다(王錫鏞 2008, 2-4).

사회 입법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시민의견을 구하는 시민참여 모형’을 들 수 있다. ‘취업촉진법’, ‘노동계약법’, ‘노동쟁의중재조정법’ 등 입법 과정에서 널리 시민의견을 구하였는데, ‘노동계약법’의 경우에는 1개월 안에 131,849건의 의견이 도달하여 입법에 대한 시민의견의 수로서는 1954년에 제정한 최초의 헌법 다음으로 많았다. 이는 많은 논란이 되었으며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물권법’ 초안에 관한 시민의견이 1만여 건이었던 것과도 비교된다. 이 시민의견 과정에서는 노동자지지파와 자본가지지파로 나누어졌는데, 특히 후자에 속하는 상회(商會)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 다른 시민 정치참여 모형으로 ‘성명서 청원 모형’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중국정법대학의 고가위(高家偉)가 교통부부장에게 매년의 도로

34) ‘공공 지식인’의 다른 사례로는 SARS 사건의 장언영(蔣言永), 에이즈환자 사건의 고요결(高耀潔), ‘3농’ 문제의 이창평(李昌平) 등을 들 수 있다.

수리비의 징수와 사용에 대한 공개 질의, 충칭의 변호사 왕언(王彦)이 철도에서의 입석표와 좌석표의 동일 가격에 대한 질의, 인권활동가인 학경송(赫勁松)이 철도부부장에 대해서 설 연휴 기간의 철도 가격의 인상에 대한 질의, 모우식(茅于軾)·하위방(賀衛方) 등 69명 학자가 전국인대에 노동교양제도 철폐를 건의한 사건 등이 있다(王錫鏞 2008, 6). 이 모형은 2008년 5월부터 실시되는 ‘정부정보공개조례’와도 관련되어 있었다.³⁵⁾

V. 결론

2000년 10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15기 5중전회에서 ‘시민의 질서 있는 정치 참여’를 제시했다. 군중 대신에 처음으로 시민으로 표현했고, 공식 문서에서 비록 ‘질서 있게’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처음으로 정부에 시민 참여를 장려하는 표현을 사용했다(Horsely 2006, 213). 이 시민의 질서 있는 정치 참여라는 표현은 중국 공산당 제16차 대표대회에서 다시 확인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변호사가 정치 참여를 추구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더욱이 중국 변호사가 다른 나라의 변호사에 비해서 정치 지위가 매우 낮고 정치 참여의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중국 변호사는 인민대표는 고사하고 자기대표도 취약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는 변호사의 고객대표에도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 변호사는 사회 - 고객의 연장 - 대표활동을 수행하면서 변호사의 입지를 강화하는 길을 찾았다. 이러한 변호사를 ‘인권옹호(維權, 이하 인권) 변호사’라고 할 수 있다. 곧 변호사는 인권활동을 통해서 사회에서의 변호사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 입지 강화는 다시 자기대표와 인민대표, 나아가 고객 대표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변호사의 자기대표, 인민대표활동이 2003년과 2008년에 활발하게 표출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2003년은 SARS 위기로 인해서 국가의 통제가 이완된 극히 예외적인 시기였다. 이 시기에 심천시와 북경시 변호사들이

35) 중국에서 시민의 정치 참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또한 ‘사단등기관리조례’를 대체하는 ‘결사법’ 제정이 필요하다.

사회대표와 자기대표 활동에 참가했다. 2008년은 중국에서 정치체제개혁이 화제가 되었던 시기였다. 중국 공산당은 2007년 말 12대 후에 북경올림픽을 계기로 정치체제 개혁을 의사일정에 올렸다. 2008년 5월에 심천에서 정치체제 개혁과 관련되는 문건(초안)이 두 차례 발표되었다. 두 문건은 심천시 정부가 5월 15일과 5월 22일에 ‘심천시위와 심천시정부가 개혁 개방을 견지하고 과학발전을 추진하며 중국특색사회주의 시범시를 건설하는 데 관한 약간의견(이하 意見)’과 ‘심천시 근기개혁강요(近期改革綱要)(徵求意見稿)’를 각각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의견을 구하였다. 두 문건을 합쳐서 ‘심천(정개방안)深圳政改方案’ 또는 ‘정개초안(政改草案)’이라고 불렀다.³⁶⁾ 6월 6일 심천시위 4기 10차 전체회의에서 ‘의견’이 통과되었다. 이 문건이 주목을 받았던 것은 ‘민주법치 건설’을 수위에 두고 그 다음에 심천·홍콩 합작, 경제 발전, 민생 개선 등의 의제를 두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이전에 ‘경제우선’의 개혁 구상과는 선명한 대비를 이루었다(阿計 2008).

그러나 5월 12일에 발생한 쓰촨대지진의 재난 구호활동과 북경올림픽 안보활동, 이어서 발생한 세계금융위기 등으로 인해서 정치체제개혁을 실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정치체제개혁이라는 주제는 다시 성장, 취업, 민생, 안정 등을 보장하는 주제로 바뀌게 되었다. 서구 선진 국가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는 자본주의 제도의 체제 폐단을 다시 폭로하였을 뿐 아니라 금융위기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방면에서 중국의 현행 제도의 장점이 부각되어 정치체제 개혁 압력이 약화되게 되었다(黃衛平·胡學亮 2009, 1; 12-13). 전국인대 2차 회의 후에 원자보오(溫家寶)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개혁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개혁을 더욱 빠르게 하는 것이며, 기제와 체제상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여러 조치의 실현을 보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체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하고, 정치체제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발전시켜서 인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 사법체제개혁을 추진하여 사회공평정의를 촉진하는 것, 감독을 강화하여 정부행정이 법에 의해 진행하게 하고 감독 아래 놓이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人

36) ‘심천정치개혁초안’은 2007년에 광둥성위 서기로 부임한 왕양(王洋, 정치국위원)이 주도하였다.

民日報』 2009/03/14; 黃衛平·胡學亮 2009, 12). 이러한 원자바오 총리의 발언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 내 개혁파는 여전히 정치체제개혁을 추진하였음을 나타내었지만 결국 정치체제개혁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였다. 2011년에 중동·북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자스민(茉莉花) 혁명’은 2012년 말에 등장한 시진핑 체제로 하여금 정치개혁 사안에 대해서 수세적인 입장을 취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중국에서의 정치체제개혁의 좌절이 중국의 변호사의 정치 참여가 2008년 이후 다시 침체되게 하는 배경이었다.

변호사는 신사회계층의 일원으로서 인대대표와 정협위원의 할당액을 받게 되었지만, 변호사가 설사 변협의 회장과 비서장이 되거나 인민대표나 정협위원 할당액을 더 많이 갖게 된다고 해도 자기대표와 인민대표 자체가 현재와 같은 제도적 틀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진정한 대표라고 할 수 없다. 변호사가 고객대표, 나아가 사회대표라는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권력에 대해서 사회의 권리가 미약하다는 현재의 틀을 타파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고객대표, 자기대표, 인민대표 활동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인권 변호사’는 고객대표와 자기 대표를 위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인민대표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 점에서 인권변호사는 그 이전 시기의 ‘개발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의 미래와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나아가 중국의 미래와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1. 논문 및 단행본

- 이동진 (2005). “중국에서의 공론장 형성: ‘쑤쓰강사건’을 사례로.” 『현대중국연구』. 제7집. 1호, pp. 45-85.
- _____ (2007). “재산권과 사회운동-중국 주택소유자운동을 사례로.” 『현대중국연구』. 제9집. 1호, pp. 49-92.
- _____ (2015). “국가와 사회 사이: 중국 변호사협회의 이중성.” 『中蘇研究』. 제39권. 3호, pp. 151-183.
- 최송자 (2010). “중국변호사사무소 조직형태의 변화 및 시사점.” 『중국법연구』. 제13집, pp. 257-290.
- Hand, Keith J. (2006). “Using law for a Righteous Purpose: The Sun Zhigang Incident and Evolving Forms of Citizen Actio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olumbia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ol. 45, pp. 114-195.
- Horsely, Jamie P. (2006). “Public Participation and the Democratization of Chinese Governance.” Zhong, Yang and Shiping Hua (eds.). *Political Civilization and Modernization in China: The Political Context of China’s Transformation*. Singapor: World Scientific Press, pp. 207-250.
- Kelly, David (2006). “Citizen Movements and China’s Public Intellectuals in the Hu-Wen Era.” *Pacific Affairs*. Vol. 79. No. 2. Summer, pp. 183-204.
- Li Fangping (2009). “Standardize Lawyers Association Elections: One Step toward Democratic of Law.” *China Rights Forum*. Vol. 1, pp. 23-32.
- Wang, Xinsong (2006). “Right Consciousness, Economic Interests, and the 2003 District-level Elections in China: Middle-Class Motivations and Democratic Implication.” Zhong, Yang and Shiping Hua (eds.). *Political Civilization and Modernization in China: The Political Context of China’s Transformation*. Singapore: World Scientific, pp. 251-288.
- 魯兢 (1997). “中共機關黨委組織狀況分析.” 『中共研究』. 第31卷. 2號, pp. 37-50.
- 唐娟·鄒樹彬 主編 (2004). 『2003年深圳競選實錄』. 西北大學出版社.
- 茅彭年·李必達 主編 (1992). 『中國律師制度研究資料匯編』. 法律出版社.
- 北京市司法局律師管理處 編 (1995). 『律師管理工作法規政策匯編(內部)』.
- 上海市司法局 (1999). 『上海司法行政發展報告』. 法律出版社.
- 阿計 (2008). “深圳政改探索中國式民主道路.” 『公民導刊』. 8期, pp. 22-25.

- 王錫鏞 主編 (2008). 『公眾參與和中國新公共運動的興起』. 中國法制出版社.
- 柳州市情調查組 編 (1996). 『柳州卷: 百縣市經濟社會調查』. 中國大百科事典出版社.
- 李凡 (2002). 『中國基層民主發展報告 2002』. 西北大學出版社.
- 李拓 (2008). 『和諧的音符-中國新興社會階層調查與分析』. 中國方正出版社.
- 李必達 (1997). 『律師的足跡: 新時期律師制度沿革(上·下)』. 工商出版社.
- 張濤·王向民·陳文新 (2008). 『中國城市基層直接選舉研究』. 重慶出版社.
- 蔣敏瑞 主編 (1991). 『律師管理工作手冊』. 安徽人民出版社.
- 鄭憲 外 (2000). 『中國參政黨運行機制』. 學苑出版社.
- 朱光磊 (1997). 『當代中國政府過程』. 天津人民出版社.
- 陳文 (2004). “從「上書」到「競選」的精彩一跳-許志永的競選經歷.” 鄒樹彬 編. 『2003 北京市區縣人大代表競選實錄』. 西北大學出版社, pp. 43-68.
- 陳宜中 (2015). “公民運動與中國轉型: 笑蜀先生訪談錄.” 思想編輯委員會. 『大馬華人与族群政治(思想 28)』. 聯經出版公社, pp. 245-272.
- 蔡定劍 主編 (2002). 『中國選舉狀況的報告』. 法律出版社.
- 鄒樹彬·唐娟·黃圍平 (2004). “2003年人大代表競選的群體效應: 北京與深圳比較.” 『馬克思主義與現實』. 2期, pp. 35-43.
- 何增科·托馬斯·海貝勒·根特·舒伯特 主編 (2007). 『城鄉公民參與和政治合法性』. 中央編譯出版社.
- 黃衛平·胡學亮 (2009). “當代中國政治中的地方政治改革探索: 2008年深圳「政改草案」解讀.” 『當代中國政治研究報告』. 第7輯. 社會科學文獻出版社, pp. 1-13.
- 中岡まり (2011). “中國地方人民代表大會選舉における「民主化」と限界: 自薦候補と共產黨のコントロール.” 『アジア研究』. 第57卷. 2號, pp. 1-18.

2. 기타

- 魯寧. “新社會階層和‘新財富’的社會屬性.” 『人民網-廣州日報』. 2007年 6月 20日.
- 段飛鳳. “中組部·江西省市領導考察南方律師事務所黨建工作紀實.” 『中國律師』. 2008年 6月.
- 黨文俊·彭念元. “上海律師參政望.” 『中國律師』. 2008年 3月.
- 樊斌. “五年省政協委員的離職回顧·體懷與認識.” 『中國律師』. 2008年 3月.
- 呂紅兵. “一位市級政協委員的參會感想.” 『中國律師』. 2008年 3月.
- 吳意. “五年來律師進入人大·政協人數翻番.” 『中國律師』. 2008年 3月.
- _____. “杭州市律師黨建的調查報告.” 『中國律師』. 2008年 6月.
- _____. “胡虎林: 為浙江律師行業管理奠基的‘開明廳長’.” 『中國律師』. 2003年 5月.

- 吳佩霜·唐益. “自薦競選風動北京高校.” 『新聞周刊』. 2003年 11月 24日.
- 齊延安. “擴大律師有序政治參與的途徑: 學習17大精神的一點體懷.” 『中國律師』. 2008年 2月.
- 陳偉強. “律師事務所黨建工作初探.” 『中國律師』. 1995年 10月.
- 秋風. “新民權行動年.” 『新聞週刊』. 2003年 12月 23日.
- 皮劍龍. “進一步完善我國律師政治參與制度.” 『中國律師』. 2009年 9月.
- 邢五一. “兩會中的律師代表和委員攝影.” 『中國律師』. 2008年 4月.
- _____. “北京律師參政議政進入上乘通道.” 『中國律師』. 2008年 3月.
- _____. “四位律師實現全國政協的零突破.” 『中國律師』. 2003年 5月.
- 胡平 (2007). “從‘俞可平文章’談起.” 『現實中國』. 2007년 1月 9日.
『人民日報』. 2007年 6月 11日; 2009年 3月 14日.
『第一財經日報』. 2006年 9月 12日.
- 新唐人電視台 (2014). “幫中共洗腦的「大師」何家棟悲劇人生(圖).” <http://big5.soundofohope.org/node/477295>. (2015년 11월 10일 검색)
- 維基百科. “齊玉苓案.” <https://zh.wikipedia.org/wiki/%E9%BD%8A%E7%8E%89%E8%B%93%E6%A1%88>. (2015년 11월 10일 검색)
- 維基百科. “許志永.” <https://ja.wikipedia.org/wiki/%E8%A8%B1%E5%BF%97%E6%B0%B8>. (2015년 11월 10일 검색)

| 논문투고일 : 2015년 11월 12일 |

| 논문심사일 : 2016년 02월 19일 |

| 게재 확정일 : 2016년 03월 14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3 No. 1 (2016)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Chinese Lawyers from Above and Below

Lee Dongjin

(Dept. of Soci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s is well known, thanks to reform and openness, China has succeeded in the economic development, but it is faced with serious social inequalities. For its economic expansion was based on the sacrifices of social minorities—largely farmers. Now it is time to pursue an economic development while reducing social inequalities. The reform in this direction is the one infringing the vested rights, and therefore the government and corporations with their privileges have limits in carrying out the reform. Besides, the politics of social movement is required in the circumstances where the politics of parties and interest groups is fragile. The activities of ‘human rights lawyers,’ who take up one part of ‘public intellectuals’ in the politics of this social movement, is noticeable. Backing up the activities of the human rights lawyers needs their enhanced political and social status, which could be looked at through their political participations of ‘self-representation’ and ‘people’s representation’ activities. The ‘self-representation’ activities means that the Lawyers Association is legally independent from the state and becomes an autonomous organization for the lawyers in the reality where they are actually under the control of the government. It is obvious that the lawyers cannot represent the clients when they cannot be their own representative—that is to say, autonomous. The ‘people’s representation’ activities refers to those of Representative

Congress of Chinese Communist Party (NRCCCP) and Chinese People's Political Consultative Conference (CPPCC) members. The Chinese lawyers have expanded their activities in these fields, meaning that their political and social status has been advanced. Their expansion in the political participation was due to the social movements in 2003 and 2007, to which the Chinese Communist Party responded by implementing a policy giving preference to "the new social class" which includes lawyers.

- Key words: Chinese Lawyers, Political Participation, People's Representation, Social Movements, New Social Class